

2008.10.17(금) 11:00

第131回 忠州市議會(臨時會)

第2次 本 會 議

# 條例案審查報告書

①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②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안

議會運營委員會

# 條例案審查報告書

## 1. 심사경과

조 례 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①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08.9.30	2008.9.30	2008.10.6	2008.10.6	정 상 교 의 원
②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안	"	"	"	"	김 현 식 의 원

## 2. 제안설명요지

### 가.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1) 제안이유

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두는 간사의 명칭이 일제의 잔재를 내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부적절 하여 일제의 잔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간사직을 수행하는 의원에 대한 예우 및 직책명의 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자 함

#### 2) 주요내용

-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·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·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의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함(안 제6조제2항, 제11조 및 부칙 제3조)

## 나.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및 협조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, 단체, 공무원 등에게 충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# 2) 주요내용

-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, 상장, 감사장으로 구분하고 패로써 수여할 수 있음.(안 제3조)
- 표창장은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거나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, 창의적 제안, 성실한 직무 수행 등의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(안 제5조)
- 상장은 의회 주관 또는 타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게 수여(안 제6조)
-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공헌하거나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(안 제7조)
-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행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로 결정함(안 제9조부터 제12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

#### 가.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 두는 간사직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임
- 위원회에 두는 간사는 위원회업무를 관리하는 직을 의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의 대표성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음
- 현실적으로 간사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진행 임무를 대행 하는 사례가 빈번함
- 지방의회관련 법규인 지방자치법에는 간사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62조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
-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됨

#### 나.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안

- 본 조례안은 의회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 지역 124개 지방자치의회에서 조례·훈령·규정으로 제정 관리하고 있음
-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여야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령은 없으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표창행위에 대한 명확한

근거가 되고 공적심사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등에 효과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## 4. 질의·답변 요지

##### 가.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◎질의 : 없음

##### 나.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안

◎질의 : 표창 수여시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은가?

▶답변 : 예산을 세우겠음

#### 5. 심사결과

가.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  
나.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안 : 원안가결

#### 6. 붙임

가.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나.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안 1부. 끝.